

유해·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(제137조 관련)

1.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.

- 가.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
- 나.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7조제2항 또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수거·파기된 사실이 있는 업체
- 다.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

2.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

| 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 및 장비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산업보건지도사·산업위생관리기술사<br>· 대기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| 가. 사무실              |
| 나. 산업위생관리기사·대기환경기사 중 1명 이상                | 나.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  |
| 다. 다음 1)부터 3)까지 중 2개 항목 이상                | 1) 스모크테스터           |
| 1) 일반·정밀·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기사 1명 이상             | 2)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|
| 2) 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| 3) 청음기 또는 청음봉       |
| 3) 전기·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·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      | 4) 절연저항계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) 표면온도계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) 회전계(R.P.M측정기)    |

※ 비고

- 가.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·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,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사·화학공장설계기술사·유체기계기술사·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- 나.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

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.

다.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### 3. 소음·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

| 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 및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산업보건지도사·산업위생관리기술사<br>·소음진동기술사 중 1명 이상<br>나. 산업위생관리기사·소음진동기사 중 1명 이상<br>다. 다음 각 목 중 2개 항목 이상<br>1) 일반기계기사 1명 이상<br>2) 건축기사 1명 이상<br>3) 토목기사 1명 이상<br>4) 전기기사·전기공사기사·전기기기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| 가. 사무실<br>나. 장비<br>1) 소음측정기(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)<br>2)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: 2대 이상 |

#### ※ 비고

가.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·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, 전자응용기술사,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나.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.

다.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라.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와 소음·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·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